

2015년6월1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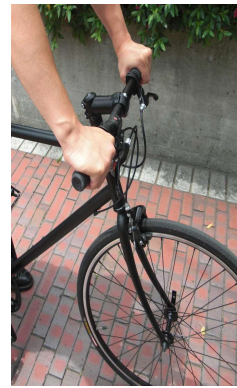
그중에 자전거에 관한 항목도 있습니다.

자전거운전중에 위험한 규칙위반을 되풀이하면

자전거운전자강습을 받아야 됩니다.

강습대상이 되는 위험행위는...

- 신호무시
- 일시부정지
- 만취운전
- 브레이크 불량자전거의 운전
- 차단건널목에 진입함 등



강습제도 개요

자전거운전자가 위험행위를 되풀이한다.

※ 3년이내에 2번이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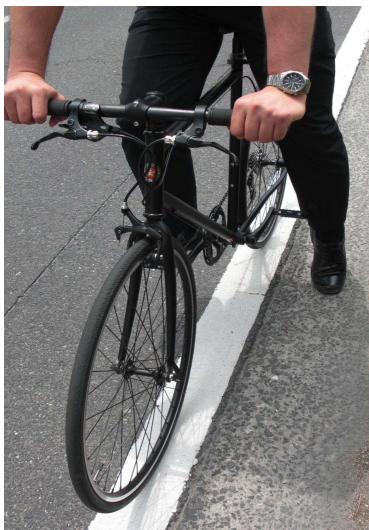
교통에 관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都道府県 공안위원회가 자전거운전자에게 강습을 받도록 명령한다.



강습수강

※강습시간 3시간

※강습수수료 6000엔



※수강명령위반 ...5만엔이하의 벌금

※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소 또는 경찰본부교통기획과 (경찰본부교통기획과 ; 0 8 6 - 2 3 4 - 0 1 1 0 ) 에 문의하십시오.